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6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3일

발의자 :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육영,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1. 제안이유

정의 규정에서 민간위탁 제외 기관을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 및 출연기관으로 폭넓게 규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였으며,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함(안 제4조의 2)

다. 민간위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3)

라.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선정 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선정 후에는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을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 : 2025. 2. 6. ~ 2025. 2.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

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를 “공무원인 위원의 수

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관련 전문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행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

른 위탁사무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u>민간위탁</u> ”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 <u>구청장</u> ”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및 성북문화재단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u>민간위탁</u> ”이란 각종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 <u>구청장</u> ”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② (생략) ③ <u>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u>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

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u>1. 위탁사무명</u> <u>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u> <u>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u> <u>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u> <u>5. 민간위탁기간</u> <u>6. 수탁기관 선정방식</u> <u>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u> <u>8.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u> <u>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u>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u>한다</u> .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 ----- -- <u>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u>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u>제5조</u> 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	② ----- ----- ----- ----- ----- ----- ----- <u>제6조</u> ----- -----

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신 설>

제8조(선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 략)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 및 구의원,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사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
분의 1 이내-----.

③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1. 구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건축사·공인노무사·행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
한 사람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④ ~ ⑧ (생 략) 제10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u>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한다.</u> 1.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u>제12조의</u>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3. (생 략) ② (생 략)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u>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u> 5. <u>관계 공무원</u>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u>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계약체결 등) ① ----- ----- ----- -----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① ----- ----- ----- -----. 1. ----- 제13조-----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